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650
----------	-------

발의연월일 : 2024. 4. 25.

발 의 자 : 강은미 · 심상정 · 장혜영
배진교 · 윤미향 · 이용빈
조오섭 · 강성희 · 양향자
양정숙 · 송갑석 · 이자스민
양경규 · 강민정 의원
(14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병역의무를 6개월 이상 이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6개월의 가입기간을,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 12개월에 추가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의 가입기간을, 실업한 사람에 대해서는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여 주고 있음.

그러나 군 복무 이행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출산 장려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현재의 군 복무 및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군 복무 및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의 추가 산입시점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는 시점이 아닌 각 사유의 발생시점으로 앞당김으로써, 국민의 정책 수혜 체감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한편,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는 데 필요

한 재원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하여 실업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군 복무, 육아,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제도를 개편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병역의무 이행 기간 전부를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고, 가입기간을 산입하는 시점을 병역의무 이행 완료 시점으로 앞당기며,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을 최근 3년간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월액으로 함(안 제18조 및 제51조).

나. 출산크레딧의 명칭을 육아크레딧으로 변경하고, 자녀가 1명인 사람에게도 가입기간을 산입하며, 가입기간을 산입하는 시점을 출산 시점으로 앞당기고, 육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필요한 재원은 전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19조).

다.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필요한 재원은 전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19조의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 (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6개월을”을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하며, 신청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 제목 중 “출산”을 “육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을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자녀를 얻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50개월”을 “100개월”로, “자녀 수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를 “자녀 수의 인정방법 및 신청방법 등에 관하여”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전부”로 한다.

1. 자녀가 1명인 경우: 12개월

2. 자녀가 2명인 경우: 첫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12개월에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

3.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첫째·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30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24개월을 더한 개월 수

제19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신청방법, 제3항에 따른 지원 범위 및 내용 등”을 “신청방법 등”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를 부담한다.

제51조제1항제2호나목 중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액”으로 한다.

제10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없다”를 “없고, 제19조의2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의 수행을 시작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자녀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얻은 자녀가 있는 경우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얻은 자녀와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얻은 자녀의 수를 합하여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단서 중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제70조제1항에”를 “제70조제1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5조의2를 삭제한다.

제80조제1항제2호의2를 삭제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u>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6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후단 신설>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 1. ~ 4. (생략) ② · ③ (생략) 제19조(<u>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u>) ① <u>2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u>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 ----- -----「<u>병역법</u>」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 -----<u>. 이 경우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하며, 신청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단서 삭제></u>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u>육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u>) ① <u>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자녀를 얻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u>

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50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자녀 수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2.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12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제19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 ② (생 략)

③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100개월-----
-----자녀 수의 인정방법
및 신청방법 등에 관하여-----
-----.

1. 자녀가 1명인 경우: 12개월
2. 자녀가 2명인 경우: 첫째 자
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12개월
에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
3.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첫
째 ·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
되는 30개월에 2자녀를 초과
하는 자녀 1명마다 24개월을
더한 개월 수

② (현행과 같음)

③ -----

-----전부-----
-----.

제19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 데 필요한 재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
가 산입하려는 경우 인정소득
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납
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연금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일반회계, 제101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및 「고용보험
법」 제78조에 따른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 ⑤ (생략)

⑥ 제1항에 따른 신청방법, 제3
항에 따른 지원 범위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51조(기본연금액) ① 수급권자
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
천2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
하면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
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
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에 따
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
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1. (생략)

2.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원은 국가가 전부를 부담한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신청방법
등-----

-----.

제51조(기본연금액) ① -----

-----.

-----.

1. (현행과 같음)

2. -----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 수급 전년도에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 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금액은 그 금액으로 한다.

가. (생략)

나. 제18조에 따라 추가로 산
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
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
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
당하는 금액

다. (생략)

② · ③ (생략)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국민인 지역가입자로서 제91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고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handwriting practice paper. It contains ten identical sets of horizontal guidelines arranged vertically. Each set is composed of three lines: a solid top line, a dashed middle line, and a solid bottom line, providing a structured space for practicing letter formation and alignment.

가. (현행과 같음)

나. _____

_____ 금액

다.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

경우 지원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u>없다</u>. 1.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것. <u>다만,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아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u> 2. (생략) ② (생략)	----- ----<u>없고, 제19조의2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u> 1. ----- ----- . <u><단서 삭제></u>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